

**브리핑**

2023년 3월 30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방송광고정책과

천지현 과장(2110-1270)

**2023년 제9차 위원회 결과(서면회의)****[의결안건]**

가.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(OBS경인FM방송국)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에 관한 건

○ 방통위는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의 OBS경인FM방송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요청(‘23.2.1.)에 대해,

-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\*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, 그 결과 (주)에스비에스엠앤씨를 OBS경인FM방송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함.

\*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,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

- 이에 따라,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와 (주)에스비에스엠앤씨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
※ 다만, 방통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